■ 수산업법 시행규칙 [별표 8] <개정 2025. 1. 3.>

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및 부속선에 관한 사항(제41조제2항 관련)

1.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

어업의 종류	허가정수
가. 연안개량안강망어업	총계: 547건
	인천광역시: 99건
	경기도: 55건
	충청남도: 224건
	전북특별자치도: 105건
	전라남도: 58건
	경상남도: 6건
나. 연안선망어업	총계: 240건
	부산광역시: 6건
	강원특별자치도: 18건
	충청남도: 36건
	전북특별자치도: 16건
	전라남도: 69건
	경상북도: 20건
	경상남도: 67건
	제주특별자치도: 8건
다. 연안통발어업	총계: 4,676건
	부산광역시: 368건
	인천광역시: 52건
	울산광역시: 205건
	경기도: 32건
	강원특별자치도: 122건
	충청남도: 203건
	전북특별자치도: 38건
	전라남도: 822건
	경상북도: 694건

	경상남도: 2,131건
	제주특별자치도: 9건
라. 연안조망어업	총계: 624건
	충청남도: 474건
	전북특별자치도: 150건
마. 연안선인망어업	총계: 7건
	강원특별자치도: 7건
바. 연안자망어업	총계: 16,207건
	부산광역시: 535건
	인천광역시: 372건
	울산광역시: 359건
	경기도: 583건
	강원특별자치도: 1,526건
	충청남도: 2,496건
	전북특별자치도: 720건
	전라남도: 2,977건
	경상북도: 2,054건
	경상남도: 4,213건
	제주특별자치도: 372건
사. 연안들망어업	총계: 598건
	부산광역시: 42건
	강원특별자치도: 3건
	전라남도: 31건
	경상남도: 25건
	제주특별자치도: 497건
아. 연안복합어업	총계: 24,679건
	부산광역시: 847건
	인천광역시: 538건
	울산광역시: 360건
	경기도: 451건
	강원특별자치도: 1,458건
	충청남도: 2,387건

	전북특별자치도: 822건
	전라남도: 8,341건
	경상북도: 1,107건
	경상남도: 6,900건
	제주특별자치도: 1,468건

비고

1. 인천광역시장 및 경기도지사는 제37조에 따라 연안어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허가정수를 합한 범위에서 서로 협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허가를 한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는 그 허가 사실을 종전의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하며, 해당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통보된 정수에 해당하는 새로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.
2. 「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·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라 조업한계선을 넘어 설정된 조업수역에 대해서는 해당 어업의 허가권자가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 정밀조사·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어업의 종류별 시·도별 허가의 정수 범위에서 어로한계선 인근지역 읍·면 또는 도서별로 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서해 5도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 지역의 읍·면 또는 도서별 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를 정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해당 읍·면 또는 도서별로 허가된 어업허가의 건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, 이에 따라 허가된 어업은 그 읍·면 또는 도서별 조업이 허용된 수역에서 유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해야 한다.
   가. 다른 수역에서 조업하거나 조업이 허용된 수역 외의 수역에서 조업하기 위해 어선이 매각·임차되어 새로운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해당 어선에 처분된 어업의 허가로 환원해야 한다.
   나. 해당 어선을 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어선감척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.
3. 1994년 5월 13일 이전에 연안안강망어업 또는 낭장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허가받은 해당 어업을 폐업하고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의 정수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
2. 부속선에 관한 사항

가. 시·도지사는 연안선망어업, 연안선인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에 대하여 해당 어업의 특성 및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을 고려할 때 부속선의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

따라 허용할 수 있다.

1) 부속선의 척수 및 부속선별 용도

2) 부속선의 규모. 이 경우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.

3) 부속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범위. 이 경우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부속선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할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부속선으로 사용하는 시기를 정하여 허용하고, 그 시기 동안에는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의 허가증을 해당 허가권자가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.

나. 연안복합어업의 어선에 집어등과 작업등을 설치하는 경우 집어등은 집어등용 설비(안정기, 집어등, 전선 및 소켓을 포함한다)의 최대 전력의 합계를 81킬로와트 이하로 해야 하고, 작업등은 최대 전력의 합계를 6킬로와트 이하로 해야 한다. 다만, 집어등의 경우 시·도지사가 81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어업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어선규모별로 고시할 수 있다.